

[별표 2]

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(제3조 관련)

분류	품목	세부품목
1. 전선 및 전원코드	대상 없음	
2. 전기기기용 스위치	전기기기용 제어소자	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⑥ 에너지 레귤레이터
	비고: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	
3.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	대상 없음	
4.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	대상 없음	
5. 전기용품보호용 부품	대상 없음	
6. 절연 변압기	가. 고주파웰더	① 고주파웰더
	나. 전기용접기	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
	비고: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,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.	
7. 전기기기	가. 과일 껍질깎이	① 과일 껍질깎이
	나. 전기 용해기	① 왁스 용해기 ② 초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
	다. 이·미용기기	① 두피모발기 ② 샴푸기기 ③ 모발가습기 ④ 손톱정리기 ⑤ 전기면도기 ⑥ 전기이발기 ⑦ 안면사우나기

분류	품목	세부품목
7. 전기기기	라. 전기의자 전동침대	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④ 각도조절의자
	마. 컴프레서(compressor)	① 컴프레서(compressor)
	바. 전기온수매트	① 전기온수매트 ② 전기온수침대
	사. 구강청결기	① 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
	아. 해충퇴치기	① 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
	자. 전기집진기	① 전기집진기
	차. 서비스기기	① 전기광택기 ②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④ 동전교환기
	카. 전기에어커튼	① 전기에어커튼
	타. 팬코일유닛(fan coil unit)	① 팬코일유닛(fan coil unit)
	파. 폐열 회수 환기장치	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
	하. 게임기구	① 레이저사격기기 ②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 비고: K 또는 KC 60335-2-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, K 또는 KC 60065 및 60950-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(비디오게임기구)을 적용한다.
	거.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	① 전기식기세척기 ② 전기식기건조기

분류	품목	세부품목	
7. 전기기기		비고: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	
	너. 전기훈증기	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	
	더. 수도 동결 방지기	① 수도 동결 방지기	
	러. 산소이온 발생기	① 산소이온발생기	
	머. 전기정수기	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	
	버. 전기세척기	① 초음파세척기 ② 과일야채세척기 ③ 기타 전기세척기 ④ 오존수 발생장치	
		비고: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한다.	
	서. 전기헬스기구	① 전기헬스기구	
	어. 전기차 충전기	① 전기차충전기(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	
	저. 에너지 저장장치	① 에너지 저장장치(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	
	쳐. 가정용 전동재봉기	① 가정용 전동재봉기	
	커. 사우나기기	① 전기스팀사우나기기 ② 전기사우나기기 ③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④ 스팀사우나용 전열기	
		터.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	① 관상어용·식물용 히터 ② 동물부화·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
			피. 기포발생기기
허.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			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
고. 전기분무기	① 전기분무기		

분류	품목	세부품목
7. 전기기기	노.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	① 물수건포장기 ② 물수건마는기기
	도.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	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비고: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
	로.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,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	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비고: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
	모.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	① 전격살충기 비고: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 다만, 전지(건전지) 및 2차전지(충전지)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
	보. 자동판매기	① 자동판매기
	소. 전기소독기	① 전기소독기
	오. 제습기	① 제습기
	조. 음식물처리기	① 음식물처리기(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)

분류	품목	세부품목
		다) ② 주방용 오물분쇄기(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)
	초 그 밖에 가목부터 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	
	비고: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,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.	
8. 전동공구	대상없음	
9.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	가. 텔레비전수상기	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
	나. 디스크 플레이어	① 디스크플레이어
	다. 오디오시스템	① 오디오시스템
	라. 전자악기	① 전자악기
	마. 오디오프로세서	① 오디오프로세서(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)
	바. 영상프로세서	① 영상프로세서
	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	
	비고: 기계·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.	
10. 정보·통신·사무기기	가. 모니터	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
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
	나. 프린터	① 프린터(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) 비고: 1.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 2.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
다. 프로젝터	① 프로젝터 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	

분류	품목	세부품목	
	라. 문서세단기	① 문서세단기	
	마. 천공기	① 천공기	
	바. 제본기	① 제본기	
		② 스테이플러	
			비고: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
	사. 복사기	① 복사기(광원의 정격 출력이 1.2 kW 이하인 것을 말한다)	
	아. 무정전 전원장치	① 무정전 전원 장치 (정격용량이 10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	
	자.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	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	
	차. 디지털TV(스마트 TV, IPTV 등을 말한다)	① 디지털TV(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)	
	카. 코팅기	① 코팅기(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)	
	타. 노트북컴퓨터	① 노트북 컴퓨터	
② 태블릿 PC(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cm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,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cm 이상이며,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 태블릿 PC로 본다)			
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	
파. 전지(충전지만 해당한다)	① 전지		
	비고:		
	1.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,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.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		
하.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			
		비고: 기계·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.	
11. 조명기기	가. 백열등기구	① 백열등기구·전기스탠드 (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)	

분류	품목	세부품목
		② 상대리아 등(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)
	나. 방전램프	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③ 수은램프 ④ 메탈할라이드램프 ⑤ 나트륨램프 (※ 칼라램프 포함)
	다.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	① 체인형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 (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) ④ 할로젠등기구 (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)
	라. 나목을 제외한 그밖의 램프	① 백열전구 ② LED램프 (모듈) ③ 할로젠전구 (250W이하) (※ 칼라램프 포함)

비고:

1. 차량, 철도,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제7호 로목 온열시트 또는 가정, 사무실, 농장,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.
2. 1차 전지(건전지) 및 2차 전지(충전지)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.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(건전지) 및 2차 전지(충전지)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.